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0 년 1 월

### 예규·판례

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을 영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60240, 2019. 11. 22.)

#### ▣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이외에 같은 법 제 40 조 제 1 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였습니다.
- 원고는 금융투자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교육세를 해당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구 교육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익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육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구 교육세법 제 5 조 제 3 항,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 ✓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바,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 ✓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업무로서 원고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보험대리점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고 봄이 타당함
  - ✓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 3 조 제 1 호 별표는 금융·보험업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원고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 ✓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한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금융투자업자의 기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에 속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19 부 2689, 2019.12.09.)

##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3.7.15.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10 호(이하 “쟁점 오피스텔”)를 신축 후 분양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2015년 제 1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2015년 제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쟁점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설령 쟁점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오피스텔 건축 당시 쟁점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신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이행을 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9.7.4.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 판단

-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쟁점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 ✓ 조특법 제 106조 제 1항 제 4호, 동법 시행령 제 51조의 2 제 3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도로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 부가가치세법 제 15조 제 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쟁점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쟁점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 ✓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 ✓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 서 991, 2017.12.20.)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 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다만, 조세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2014. 12. 31. 이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면, 설령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2016. 7. 23. 시점에 취득세 면제의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함(조심 2019 지 3533, 2019.12.13.)

####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6.8.23.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75,363.7938㎡를 신축한 후, 2016.10.11. 위 건축물 중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용 공동주택 562세대 74,606.77㎡(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신고(2014.7.2.) 당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 1295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 33 조 제 1 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습니다.
-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 9. 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 판단

-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2016.8.2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3 조 제 1 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 12955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14 조의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되어야 할 지방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당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 두 15039 판결; 조심 2018 지 1116, 2019. 6. 17.)
  -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은 1995. 1. 18. 경기도세감면조례 제 13 조 제 1 항에서 신설되어 2014. 12. 31.까지 약 20년간 시행된 점
  - ✓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4.6.16.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4.7.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 라. 직전 과세연도에 29 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 세 이상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 산출을 위한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됨(서면-2018-법인-3678, 2019.12.27.)

## ■ 예규 전문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판매 및 정비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2015~2017 과세연도에 조특법 §29 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8 과세연도에 상시 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특법 §29 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예정

### (질의내용)

- 직전과세연도에 29 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 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특법 제 29 의 5 제 1 항(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시 조특령 제 26 의 5 제 7 항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직전과세연도에 29 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 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 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6 조의 5 제 7 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5 제 1 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예규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6 조의 5 제 7 항은 “제 6 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현재일 현재 29 세 이하인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 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의 일부 문구인 “이후 과세연도에도 29 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는 점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규질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 세 이하인 자가 해당 과세연도에도 29 세로 본다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6 조의 5 제 6 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방식에 대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5 제 2 항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후관리 위배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그리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감소인원분인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를 계산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 세 이하인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 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년이 경과할 때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감소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즉,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 26 조의 5 제 7 항은 세액공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세액 납부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바,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시켜준 예규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 세액공제와 추가세액납부로 나누어 규정된 입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